임신 사선건강관리 시원 신청서							
신청인 정보 (□여성 / □남성)							
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-					
주소							
연락처(핸드폰)		E-mail					
배우자 정보 (□법률혼 / □사실혼 / □예비부부)							
성명	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-					
신청자 대상 설문 *선택사항이나, 사업의 필요성·지속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응답을 요청드립니다.							
(1) 혼인	혼인기간 (예: (법률혼, 사실혼) 2년, 5기	1월, (예정자) 3개월 후 등)					
		(년 개	월)			
(2) 자녀	현재 자녀 수 (없는 경우 0명)	추가 자녀 계획 (미정인	경우 0명)				
	(명)	(명)			
(3) 인지경로	□언론보도 □인터넷 검색 □보건소 등 공공기관 □지인 권유 □기타()						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
		년	월 일	<u> </u>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			
시·군·구 보건소장 귀하							
	7 H	게루니그		_			
	구 분						
	공통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1부						

첨부서류	구 분		제출서류	
		공통	○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1부 ○ 신청자 주민등록등본*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1부	
	신청	추가	 ○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, 추가 서류 없음 ○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, <u>아래 서류 제출</u> - 법률혼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사실혼: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,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- 예비부부: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○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, ①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, ②청첩장·사실혼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,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*(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) 제출 	
	청구		○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○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○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	
	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			

※ 유의사항 : 1) 허위 기재, 중복 지원, 급여 검사,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등의 경우 지급 제한 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2)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
※ 결정기간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

*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, 1일은 8시간 기준

※ 검사가능기간 :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
*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